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원(개인사업자) 모집공고문

1.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

- 모집인원 : 6명(안심확인제 수질검사원)
- 계약기간 : 2025. 6. 2 ~ 2026. 5. 31

2. 계약형태

- 민간위탁계약(개인사업자)

3. 계약내용

- 동두천시 수돗물 안심서비스 업무(붙임1 안심서비스 설명자료 참조)

4.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인 자로 계약 기간에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 보유자로 개인 차량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수질검사원 차량 미제공)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두천시에 등록된 자
- PC 및 모바일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

5. 용역대가

- 서비스 제공 건수에 건당 위탁단가를 곱하여 산정(식비·유류비 위탁단가 포함)

6. 선정절차

- 1차 선정(서류, 40점) → 2차 선정(면접, 60점) → 최종 계약대상자 선정
 - 면접대상 : 최종 선발 인원의 5배수
 - 합격자 결정 : 서류+면접 고득점 순으로 결정

7. 선정일정

- 계약대상자 1차 선정(서류) 발표 : 2025. 5. 22
- 계약대상자 2차 선정(면접) 실시 : 2025. 5. 26
- 계약대상자 최종선정 발표 : 2025. 5. 28
- 위탁계약 체결 : 2025. 6. 2

8.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5. 5. 13 ~ 2025. 5. 20
- 접수 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방문/이메일에 한하며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유효
 - 제출서류 접수처 : 동두천수도지사(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3208번길 1),
jhchung@kwater.or.kr
 - 제출서류(사본 제출가능, 원본은 면접 시 제출)
 - 1) 지원서 1부(붙임2 양식 참조)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참조)
 - 3)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4) 자격증/경력 및 교육 관련 증명서류(해당 시)(붙임5 관련 인정 자격증 참조)
 -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9. 기타 유의사항

- 허위서류 제출, 기타 자격요건 미구비자 등은 최종 계약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집에서 제외되며, 최종 계약대상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위탁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 계약대상자 지위는 상실되어 차순위자를 최종 계약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 중 최종계약대상자 이외의 자의 서류는 계약대상자 최종선정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 시 본인 확인 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됩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동두천수도지사(031-860-9311)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수돗물 안심서비스 설명자료

- (정의) 국민 수돗물 안심 사용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수돗물 안심확인제+욕내배관 진단·세척) 제공으로 적수, 유출 등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객만족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임.
- (목적) 국민 가정에 도달한 수돗물에 대한 객관적·체감형 정보 제공
- (내용) 가정집 수도꼭지 유출수 수질검사(안심확인제) 및 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고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로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검사항목: 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욕내배관 진단·세척	무료로 욕내배관 내시경 진단 및 플러싱 세척을 제공하는 서비스 (진단세척 범위: 수도계량기~수도꼭지)	

○ (업무수행 절차)

가) 안심서비스 : 안심서비스 신청 시에 방문 수질검사 실시

① 제도 홍보(언론보도, 전광판 등 활용) → ② 안심서비스 신청 접수 → ③ 방문일시 협의 → ④가정 방문 요령 숙지 → ⑤ 정수장 및 배수지 수질 및 주변 지역 공사 관련 사항 확인 → ⑥ 장비준비 및 홍보물 준비 → ⑦ 가정 방문 및 수질검사 실시 → ⑧ 수돗물 홍보 → ⑨ 수질검사 결과표 배부

나) 수질민원 : 수질민원 또는 1차 수질검사 부적합 시에 방문 수질검사 실시

① 제도 홍보(언론보도, 전광판 등 활용) → ② 수질민원 접수 → ③ 수질민원 대응 요령 숙지 → ④ 정수장 및 배수지 수질 및 주변지역 공사 관련 사항 확인 → ⑤ 장비준비 및 홍보물 준비 → ⑥ 가정 방문 및 검사 실시 → ⑦ 수돗물 홍보 → ⑧ 수질검사 결과표 배부

다) 자체방문 검사 : 지자체 자체 계획에 의거 방문검사 실시

① 자체 검사계획 수립(수질 저하 예상지역 등 포함) → ② 방문일시 협의 → ③ 수돗물 Q&A 숙지 → ④ 장비준비 및 홍보물 준비 → ⑤ 가정 방문 및검사 실시 → ⑥ 수돗물 홍보 → ⑦ 수질검사 결과표 배부

<붙임2>

지 원 서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E-mail	
	(비상연락처)		

2. 응시자격(학력 수준) 확인사항

학 력	<input type="checkbox"/> 중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졸 이상
전 공 (해당시)	

3. 경력 및 자격 사항

경력 사항			
기관 또는 업체명	기간 (‘00년 0월 0일~ ‘00년 0월 0일)	직책	담당업무

자격 사항

* <붙임 5>에 안내된 인정 자격증 중 해당사항 기재

자격증명	취 득 일 자(‘00년 0월 0일)	발 급 기 관

<붙임4>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지원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공지사항

- 「지원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원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5> 관련 인정 자격증

구분	분야	인정 자격증	비고
자격증	수질, 토목, 정수 및 관망시설, 상하수도, 기타 환경분석·측정 관련 분야	기술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망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인정 자격증 외 기타 자격증은 불인정

※ 자격증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